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병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874호)

2025. 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황 충 연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2
IV. 검토의견	3
1. 산양삼과 산양산삼의 구분 정의	3
2.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신고 절차 간소화	7
3. 특별관리임산물 제조업 신고 및 영업폐쇄 등 규정 신설 ..	12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이병진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5. 7. 31.

다. 회 부 일 : 2025. 8. 1.

II.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하려는 자는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생산적합성조사 결과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산림청장은 생산적합성조사 결과가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 신고 시 임업인으로 하여금 생산적합성조사 결과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소규모 임업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특별관리임산물 제조업의 경우 신고 및 영업폐쇄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산양삼과 같은 고부가가치 임산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재배 기간에 따라 산양삼과 산양산삼을 구분하여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양삼과 산양산삼을 구분하여 정의하도록 하고 생산적합성 조사 주체를 변경하는 등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산지에서 재배하고 품질검사에 합격한 오갈피나무과 인삼속 식물 중 연근이 15년 미만인 것을 산양삼, 15년 이상인 것을 산양산삼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산림청장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생산적합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다. 특별관리임산물 제조업 신고 및 영업폐쇄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8조의18 및 제18조의19).

IV. 검토의견

1. 산양삼과 산양산삼의 구분 정의

개정안은 재배 기간에 따라 연근이 15년 미만인 것은 ‘산양삼’으로, 연근이 15년 이상인 것은 ‘산양산삼’으로 구분하여 정의하려는 것임(안 제2조).¹⁾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3의2. “특별관리임산물”이란 소비자의 보호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임산물로서 <u>산양삼</u> 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건조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u><신설></u>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 ----- ----- ----- <u>산양삼·산양산삼</u> ----- -----. <u>3의3. “특별관리임산물 제조업”이란 특별관리임산물을 원료로 하여 가공·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u>

1) 「인삼산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삼”이란 오갈피나목과(科) 인삼속(人蔘屬) 식물을 말한다.

8. “연근”(年根)이란 인삼이 출아(出芽)하여 자란 햇수를 말한다.

「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산림청고시)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연근”이란 산양삼이 출아하여 자란 햇수를 말한다.

현행	개정안
<u>3의3. “산양삼”이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산지에서 재배하고, 이 법 제18조의4에 따른 품질검사에 합격한 오갈피나무과(科) 인삼속(人蔘屬) 식물을 말한다.</u> <u><신 설></u> <u>3의4. (생 략)</u> 4. ~ 8. (생 략)	<u>3의4. -----</u> ----- ----- ----- <u>식물 중 연근이 15년 미만인 것을 말한다.</u> <u>3의5. “산양산삼”이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산지에서 재배하고, 이 법 제18조의4에 따른 품질검사에 합격한 오갈피나무과 인삼속 식물 중 연근이 15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u> <u>3의6. (현행 제3호의4와 같음)</u> 4. ~ 8.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재배 기간의 구분 없이, 산지에서 재배하고 품질검사에 합격한 오갈피나무과 인삼속 식물을 모두 ‘산양삼’으로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산양삼은 농약 처리 등 인위적인 재배관리가 불가능하여 연수가 높아질수록 생존율이 급격히 낮아져 그 가치와 희소성이 높아짐에도 재배 연수에 따른 공식적인 분류 기준이 부재하여,

고년근 산양삼이 지닌 높은 가치가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차별화된 브랜딩에도 한계가 따르는 상황이므로 재배 기간에 따라 산양삼과 산양산삼을 구분하여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재배 기간에 따라 ‘산양삼’과 ‘산양산삼’을 구분하여 정의함으로써 고년근의 기준을 세우고 프리미엄 시장을 도입·육성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고품질 산양삼 시장의 육성을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과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산양삼’과 ‘산양산삼’을 연근 15년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연근(뇌두길이)에 대한 과학적 식별근거가 뒷받침될 필요성이 있음.

산림청은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15년을 기준으로 산양삼의 명칭을 ‘산양삼’과 ‘산양산삼’으로 이원화하는 것은 기존 산양삼 생산·유통시장의 혼란과 ‘산삼’과의 용어 혼선 등 관련 업계의 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높으므로,

명칭변경 없이 「임산물 표준규격」(산림청 고시)²⁾ 내 산양삼 등급 규격을 개선하여 연근(뇌두길이)별 정량적 수치 제시를 통해 프리미엄 차별화 대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임.³⁾

2) 「임산물 표준규격」 [별표 5] 임산물의 종류별 등급규격

5. 약초류

1) 산양삼

가) 등급 규격

항목/등급	특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특별관리임산물 (산양삼) 품질검사	합격(무농약)		합격 (무농약 또는 적합)	
재배유형	종자 파종	종자 파종 또는 종묘 식재(이식)		
경흔적 개수	경흔적 7개 이상	경흔적 5개 이상	경흔적 3개 이상	경흔적 2개 이상
적변 유무	적변 없음		적변 없음 또는 적변 혼재	

- ※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합격여부는 품질검사 합격증에서 확인 가능해야 함
- ※ 재배유형, 경흔적 개수, 적변 유무 항목은 생산자 및 판매자가 직접 판단해야 함
- ※ 경흔적은 산양삼 너두의 명확한 줄기(莖) 흔적을 말함
- ※ 뿌리썩김 등이 심하게 나타난 경우 '3등급'에 해당함

o 산양삼을 유통·통관 또는 판매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검사 합격증(이하 합격증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는 크기의 상자 또는 용기에 포장하고, 합격증을 붙여야 한다.

- 3) 산림청은 현행 품질검사 결과, 재배유형, 적변 유무 등에 따라 4개 등급(특등급, 1~3등급)을 구분하고 있으며, 특등급의 산양삼에 대하여 등급규격을 연근(너두길이)별로 차별화하는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설명임.

2.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신고 절차 간소화

개정안은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하려는 자가 생산적합성조사 신청서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산림청장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생산적합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 ①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특별관리임산물의 종자·종묘의 생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품질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서 조사한 생산적합성조사 결과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생산적합성조사 결과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신고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생산적합성조사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	제18조의2(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 ①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특별관리임산물의 종자·종묘의 생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생산적합성조사 신청서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품질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생산적합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생산적합성조사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현행	개정안
<u>하여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이 제2항 또는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	<u>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u> 1. 해당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토양, 종자 또는 종묘의 이용·사용 금지 2. 그 밖에 적합한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에 따른 신고·변경신고 또는 신고의 수리에 필요한 사항은

현행	개정안
<u>를 위하여 실시하는 생산적합성조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u> <u>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변경신고 또는 신고의 수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u>	<u>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현행법은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하려는 자가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생산적합성조사 결과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임업인이 산양삼을 재배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에 생산적합성조사를 신청하여 결과를 통보받은 후, 다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그 결과를 첨부하여 생산신고하고 있음.⁴⁾

현행 산양삼 생산신고 제도는 전문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있어 임업인들이 불필요한 이중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산림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2의2. 법 제18조의2에 따른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이러한 구조는 신고 지연 및 기피로 이어져 생산과정의 체계적 관리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약화시키고, 행정 신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또한, 국민 편의를 강조하는 정부의 ‘원스톱 서비스’ 정책 기조와도 상충하고 있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생산적합성조사를 산림청장이 실시하도록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신고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임업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안 제18조의2제5항은 생산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절차 개선에 따라 생산신고 후에 산림청장의 생산적합성조사가 진행되므로 조사에 필요한 소요기간(30일 이내)을 반영하여,⁵⁾ 전문기관으로부터 생산적합성조사 결과를 받은 날부터 해당 기간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2(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의 신청 등) ③ 제1항에 따라 생산적합성조사 신청을 받은 전문기관은 30일 이내에 영 제17조의3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생산적합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결과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둘째, 현행법 제30조의2(수수료)제1호는 생산적합성조사를 신청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⁶⁾ 개정안에 따라 생산적합성조사를 산림청장이 실시하도록 개선할 경우 현행 수수료 납부 규정은 삭제하고, 안 제18조의2에서 산림청장이 전문기관에 생산적합성조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산림청은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나, 안 제18조의2제3항에서 생산적합성조사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생산신고가 불수리 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제6항은 세부 처리절차에 대한 위임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아닌 현행과 같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6)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생산적합성조사를 신청하는 자

3. 특별관리임산물 제조업 신고 및 영업폐쇄 등 규정 신설

개정안은 특별관리임산물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로 하여금 산림청장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 하도록 하고,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신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영업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18 및 제18조의19 신설 등).

현행	개정안
<u><신설></u> <u><신설></u>	<u>제3장의3 특별관리임산물 제조업 신고 등</u> <u>제18조의18(특별관리임산물 제조업 신고 등) ① 특별관리임산물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 <u>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u> <u>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u>

현행	개정안
<신설>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영업을 휴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따른 신고·변경신고의 절차 및 방법, 신고 수리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19(특별관리임산물 제조업 영업폐쇄 등) ① 산림청장은 제18조의18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특별관리임산물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

현행	개정안
	<u>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u> <u>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u> <u>2. 영업정지기간 중에 특별관리임산물을 제조한 경우</u> <u>3. 폐업,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인하여 특별관리임산물 제조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u> <u>4. 제18조의18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특별관리임산물 제조업을 계속한 경우</u> <u>5. 특별관리임산물 제조업과 관련하여 해당 제조업체의 대표자 등 임원·직원이 벌금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경우</u> <u>② 제1항에 따른 영업폐쇄 및 영업정지 등의 세부기준은 그</u>

현행	개정안
제30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 4. (생략) <u><신설></u> 5. (생략)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 (생략) <u><신설></u>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u>중요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u>	<u>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30조(청문) ----- ----- ----- ---. 1. ~ 4. (현행과 같음) <u>4의2. 제18조의19에 따른 영업의 폐쇄</u> 5. (현행과 같음) 제34조(과태료) ① ----- ----- ----- -----. 1. ~ 6. (현행과 같음) 7. 제18조의18제1항을 위반하여 <u>산림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특별관리임산물 제조업을 영위한 자</u> ② ----- ----- -----. 1.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u>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신고</u>

현행	개정안
2. (생략) <신설> <신설> ③ (생략)	<u>를 하지 아니한 자</u> 2. (현행과 같음) 3. 제18조의18제3항을 위반하여 <u>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u> 4. 제18조의18제3항을 위반하여 <u>휴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u> 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자의 경우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산양삼을 원료로 가공 또는 제조하는 자(제조업자)의 신고 및 영업폐쇄에 관한 절차 등은 규정하지 않고 있음.

산양삼은 특별관리임산물로써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임산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잔류농약 검사, 생산과정 확인, 품질검사 등 엄격한 품질관리 제도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실제 생산·유통 과정에서는 인삼이나 중국산 삼이 국내산 산양삼으로 둔갑하여 가공원료로 사용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유통관리 및 규제에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⁷⁾

7) “최근 5년간 불법 산양삼 적발 강원 417건으로 전국 최다”(강원일보, 2024년 10월 24일); “중국 삼을 산양삼으로 둔갑…최근 5년간 불법 유통 적발 1287건”(메디컬투데이, 2021년 10월 1일);

이러한 유통 행위는 제도의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더 나아가 국내 산양삼 산업의 경쟁력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음에도, 유통관리 및 규제가 생산단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어 품질관리 제도의 실효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특별관리임산물 제조업자에 대한 신고 및 영업폐쇄 등의 관리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산양삼의 생산·유통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신뢰도 확보와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법률의 본칙에서 ‘장(章)’을 구분하는 기본원칙은 조문 수가 많을 경우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규정 내용의 성질에 따라 몇 개의 ‘장’으로 나누어 규정하는 것이나,⁸⁾

개정안에서 별도의 장(안 제3장의3)으로 신설하는 특별관리임산물 제조업 신고 등은 2개 조문(안 제18조의18 및 제18조의19)으로, 그 내용 또한 현행법 제3장(특별관리임산물의 관리)⁹⁾과 유사한 성질이므로, 안 제3장의3을 신설하기보다 해당 조문을 현행 제3장에 포함하는 방안을

“‘국내서 10년 키워 국산 둔갑’…중국 산양삼 유통 3명 적발”(연합뉴스, 2016년 8월 23일) 등

8) 다만, 조문 수가 적더라도 규정 내용의 성질을 구분할 필요가 있으면 장으로 구분하여 법률 전체의 체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 2024.5., p.80)

9) 현행법 제3장(특별관리임산물의 관리)에는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 신고(제18조의2) 및 유통관리(제18조의7) 등을 포함하고 있음.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안 제18조의18제5항의 대통령령 위임사항 중 ‘신고 수리의 기준’은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복되는 내용이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산림청은 산양삼을 활용한 제조업자 관리 규정 신설에 찬성하나, 안 제18조의18제5항의 대통령령 위임사항은 세부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¹⁰⁾

문 의 처
02)6788-5423

10) 한편, 현행법 제33조(벌칙)는 특별관리임산물 생산 신고(제18조의2제1항)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관리임산물 제조업자에 대한 신고 위반은 과태료 처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산림청은 ① 현행법이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을 생산적합성조사, 생산품질관리 등을 통해 생산단계부터 엄격히 관리하려는 취지로 생산 신고 위반을 벌칙으로 다루고 있는 점, ② 제조업 신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고만으로 가능한 점, ③ 유사 입법례인 「인삼산업법」에서 4년근 이하 제조판매의 신고 위반을 과태료(1천만원 이하)로 처분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개정안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 제조업 신고 위반은 과태료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설명임.

【 유사 법률의 제재사항 비교 】

구분	개정안(임업진흥법)	인삼산업법	식품위생법
제조업 신고위반	(과태료) 1천만원이하	(과태료) 1천만원이하 *4년근이하 제조판매 (벌칙) 1년이하징역 또는 1 천만원이하 벌금 *홍삼이나 5년근이상 제조판매	(벌칙) 3년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또한, 안 제18조의19(특별관리임산물 제조업 영업폐쇄 등)와 관련하여 제조업자의 영업폐쇄 등 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규정 마련의 필요성에 대하여, 산림청은 향후 시행 경과에 따라 관련 문제 발생 시 과태료 도입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임.